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안내문

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 간 "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"을 체결하여 공급되며,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.

공공임대주택, 민간임대주택 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하며, 민간임대주택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·관리 합니다

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,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분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계약 진행 및 입주 중 확인하셔야 할 필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확인 필수사항

	- (4674 644 44 66 4 46 6146			
필수 확인사항	해당 법령 및 근거			
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	[관련 법령, 협약 내용]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 "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법 제49조"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, 임시사용승인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,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(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) 이전까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			
<mark>확정일자</mark> 확인 (*계약일)	대항력(점유,전입신고)과 확정일자를 갖춰야, 임차인 보호(선순위자)가 될 수 있습니다. *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 습니다.			
<mark>가압류</mark> 상황 (*계약일,잔금일)	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*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*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,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.			
<mark>최우선변제권</mark> 해당여부	[관련 법령] "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, 제8조"에 따라 소액임차인(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)은 <mark>최우선변제권(대항력</mark> 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)을 가짐 * 소액임차인 기준 금액(*서울시): 1%5,500면 이하(23,02.21~), 1억5,000면 이하(21.05.11.~23,02.21.) 최우선변제 금액(*서울시): 5,500면 이하 * 대항력 요건: 전입신고(*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)			
<mark>원상복구</mark> 계약 전	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하므로 <mark>주택을 인도받는 즉시</mark>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 어두시기 바랍니다.			

●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(예정)자 임차인 입주 중 확인 필수사항

필수 확인사항	해당 법령 및 근거				
<mark>임대료</mark> 증액	[관련 법령] "표준임대차계약서" 내용에 따라,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 임대료 증액 5% 범위 이내 가능. 단, 임대차계약 혹은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불가 **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"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" 및 "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"에 따라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, 이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적정 인상 선을 찾거나 "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"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상 범위를 조정 받아야 함				
임대보증금 반환	[관련 법령] "표준임대차계약서" 내용에 따라, 사업자(시행사,임대사업자)는 임 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<mark>주택을</mark>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해야 함				
<mark>원상복구</mark> 계약 후	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,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,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 여야 합니다.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, 임대사업자 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 우선 공제할 수 있음 ** 유보급 한도 기준(안): 최대 300만원 (파손(고장) 정도에 따라 차등) ** 우선 공제한 유보급에서 정산한 나머지 차역 반한 기준(안): 15일 이내 반한				

**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, 계약(갱신),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<u>원스톱</u>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<u>연계를 통한 법률지원</u>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(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: 02-763-0765~0768,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: 02-2133-1200)

강변역 청년안심주택 비바힐스강변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

(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-11)

공공지원 민간임대

2025. 09. 04.

더작품(정지량 외6명)

[주택개요]

- 주택위치 :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593-11 (2호선 강변역 4번출구)

- 공급호수 : 총 98세대 중 금회 추가모집 공공지원민간임대 2세대(일반공급 2세대) 및 예비자모집

- 단 지 명 : 비바힐스강변

- 시 행 사(임대사업자) : 정지량 외6명

- 시 공 사 : 우암건설(주)

※ 기존 계약자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신청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.

-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 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.
- 청년안심주택은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, 「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」, 「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」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.
- ※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09.04. 입니다.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이며,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- 당 단지는 2021.11.10. 사용승인이 완료되었으며, HUG 임대보증금보증은 가입 되어있으며, 신규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기준에 따라 갱신 예정이며, 미 갱신시 사업주는 계약해지를 원하는 입주자에게는 계약해지 후 보증금 전액 반환 예정입니다.
- ※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간 : 2024.01.06. ~ 2025.11.05. / 2023.12.30. ~ 2025.11.20.
- . (*종료일은 각 호실별 상이함)
-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 보험은 이행되지 않으며, 등기사항전무증명서상(등기부등본상) 잔금일 익일까지 물건지(입주단지)에 임차인 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,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. (단지(임대사업자) 문제로 인한 입주예 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(100만 원)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.)
- 청년안심주택 자체 근저당, 가압류 등에 의해 보증금 대출이 불가능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으니, <u>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전 반드시 대출 실행은행에 문의 바랍니다. (입주예정자께서는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</u> *확인 방법 :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, 가압류,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.
- 입주예정자 개인의 사유로 일반(개인)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개인사유 대출 불가로 인한 계약 해지 시에는 위약금 100만원을 부담하셔야합니다.)
-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,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.
-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, 보증수수료의 75%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, 25%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. (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, 임대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)
-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,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수 있습니다.
-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
- 본 추가공고와 최초공고(2021.09.03.)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 본 추가공고의 내용이 우선시 되며 본 추가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공고를 따릅니다.
-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강변역 청년안심주택 비바힐스강변 입주지원센터(010-2314-7380)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[공급일정 및 청약]

입주자 모집공고	Þ	청약 신청	당첨자 발표	D	당첨자 서류 사본 제출 (e-mail)	Þ	계약 체결
2025.09.04. (목) 16:00		2025.09.06. (토) 10:00 ~. 2025.09.08. (월) 13:00	2025.09.09. (화) 15:00		2025.09.10. (수)		2025.09.14. (일) 10:00 ~ 12:00

■ 입주지정 기간: B형-25.11.05 / C-1형-25.11.21

■ 세대확인 일시 : 계약체결 전 확인

■ 서류제출 장소 : 계약체결일에 원본제출(e-mail 사본제출: vivariver21@naver.com)
■ 계약체결 장소 :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51, 2층(비바힐스강변 입주지워센터)

■ 청약 문의

- 대표번호 : 010-2314-7380. 월~금요일 10:00~17:00 (점심시간: 12:00~14:00)

- 홈페이지: https://vivahillskb.co.kr

- 청약신청페이지: https://vivahillskb.co.kr - 청약신청 - 청약신청 (청약신청시간에만 open 됩니다)

-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(010-2314-7380)를 통하여 실시하고 있으며,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■ 청약 신청 : 단지 홈페이지

- 당첨자의 모든 서류는 당첨자 계약체결일에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-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1000%(10배수)를 예비자로 선정하며,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.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, 계약 후미입주,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,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 ※ 예비자 소진 후에도 공실이 발생할 경우 탈락자를 대상으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. 해당의 경우에도 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되며,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.
- 본 주택에 청약 시 일반공급 중 주택형(타입) 별로 1건만 가능하며, 신혼부부(예비신혼부부 포함)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(예비부부)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,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.
- 입주자 세대 확인은 계약 체결 전 진행됩니다.
- 유의사항 (그 외 유의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)

[공급현황] (단위 : 원)

공급 유형		주거 전용 (타입)	공급 호수	보증금	임대료	
청년 또는 신혼부부	일반	32.88m² (B형)	1	₩148,300,000	₩494,000	
		31.93㎡ (C-1형)	1	₩147,600,000	₩496,000	
합 계			2			
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되며, 변경할 수 없습니다.
-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,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※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은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

[신청자격 및 제출서류]

-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5.09.04. 입니다.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,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. 본인 인증 필수
- ※ 모집공고 내 모든 일정 및 일시는 한국시간 기준입니다.
-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(이하 '신청자')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 주택은 청약자(당첨자)와 및 계약자, 입주자(전입자)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.
-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(이륜차 포함)의 소유·운행이 가능합니다. (단, 세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)
- 자동차가액 기준 : "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" 준용
- 그 외 신청자격 :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름. 단, 소득 및 자산,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
- 2025년 자동차 가액기준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, 아래 가액보다 적은 가액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만 청약가능

자동차가액	
3,803만원	

-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: 최초 모집공고 내용을 따르되 최신(2025년) 기준에 따름
- ※ "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"과 "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"의 차이
-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
- 등록(사용) 자동차가액 판단 :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(단, 등록(사용) 할 자동차가액 판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. 등록(사용)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)

[당첨자발표]

- 단지 홈페이지 2025.09.09.(화) 15:00
- 당첨자 : 당첨자 발표 시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동·호수를 무작위로 배정하여 함께 발표합니다.
- 예비당첨자 : 당첨자 계약 이후 발생한 잔여 세대는 예비당첨자에게 사업 주체가 정한 방식에 의해 순차 진행되며,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.

[별첨]

■ 일반공급 제출서류 (최신(25년))

제출서류	발급처	유의사항
1. 신분증 사본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 면허증 中 택1) ※ 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※ 신혼부부,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및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추가	조미네티	
2. 주민등록등본 (세대구성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전체 포함) ※ 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세대분리 시 "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" 추가	. 주민센터, 구청, 시청,	
3.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4. 혼인관계증명서 (신청자 본인 기준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) ※ 청년의 경우도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	정부24(인터넷) -	
※ 영단의 영구도 본단단계88시 세월 必 ※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"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" 추가 (입주 전 혼인신고 및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必)		
5. 공급신청서	홈페이지에서	
6. 서약서	양식 다운로드	
7.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		
8.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- 최근3년간 (세목전체 / 과세·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) (서울시 내역 1부, 전국 내역 1부) ※ 무주택/자동차(이륜차 포함) 무소유 확인 - 청년: 본인만 출력 제출 - 신혼부부: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- 예비신혼부부: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※ "과세내역 없음" 인 경우도 발급	주민센터, 구청, 시청	- 직접 방문하여 발급 -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정규칙)) 준용
9. [입주 자격] 자동차(이륜차 포함) 가액 증명 자료(자동차 소유자) ※ 자동차등록원부, 자동차등록증 추가	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, 정부24(인터넷)	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(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(현행행정규칙)) 준용
10. 그 외 자격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	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	
11. 전입신고 후 등본(당 사업지로 주소이전 된) 추가 제출	정부24(인터넷), 주민센터	입주 후 7일이내 제출